

2010.10.18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10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31개 항목 마련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**개요**

-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?
 -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목표치임.
- 「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」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“항목 및 목표치”와 “운용 방법”에 대하여 규정
 - 주거·교육·교통·문화·의료 등 농어촌 주민의 삶에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8개 분야에서 31개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 포함.
 - 정부는 31개 항목과 목표치를 매년 점검·평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통지하고, 통지받은 기관은 그 내용을 고려하여 향후 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”에 수립하여 반영

□ **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**

- 개정이유
 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**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**를 정하고, **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운용 방법** 등을 규정
 -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,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**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**하고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

○ **주요내용**

- **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 및 운용 방법 등을 마련(안 제15조)**
 - 주거·교육·교통·문화·의료 등 농어촌 주민의 삶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 중 측정이 가능하고 정책집행으로 개선이 가능한 **31개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**를 정함.
 - (정부) **농어촌서비스기준을 매년 점검**하여 삶의 질 향상위원회에 보고
 - (위원장)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지
 - (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) 통지받은 내용을 고려하여 삶의 질 향상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에 제출
 - ※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민, 전문가,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**농어촌 서비스기준협의회**를 구성하도록 정함.

□ **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**

- 제정이유
 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(법률 제10386호, 2010. 07. 23. 공포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
 - **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** 지원 기준 및 방법 마련(안 제2조)
 -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고, 지역주민과 귀촌인력이 운영의 중심이 됨.
 -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·군·구에 제출하면 시·도지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- 농어촌서비스기준협의회 구성 및 기능 규정(안 제3조)

· (협의회 구성)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농어업인 등 서비스기준 수혜자, 전문가, 공무원

※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의 설정·조정,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

※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과 목표치는 부록 참고.

부록

<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과 목표치>

부분	항목	목표치
주거	거주가능 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(거주가구) 비율을 90% 이상으로 제고한다. * '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'은 주택법상에 명시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(건설교통부 공고 제2004-173호)을 만족하는 주택을 말한다.
	난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% 수준으로 높이고,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.
	공동시설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로당,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.
	안전한 마실 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% 이상으로 높인다. 지자체는 원수 수질 검사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.
	오폐수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하수도 보급률을 71% 이상으로 높인다.
교통	대중교통 운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,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.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.
	여객선운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.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.
	인도 설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읍·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.
교육	유치원/초등학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.
	고등학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·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.
	폐교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.
	방과후학교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과 과목, 특기 적성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%이상으로 제고한다.
	교육발전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·군에 지자체와 교육청,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.
	평생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읍·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.
보건 의료	1차진료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·군내에서 내과, 한방과,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.
	순회방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.
	의약품구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.
사회 복지	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
	청소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.

	아 동	•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교를 위한 이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 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.
	영유아	•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.
	다문화가족	•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.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
응급	응급서비스	•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.
	도서·벽지 서비스	• 낙도·벽지에 헬기·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.
	소방서비스	•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% 이상으로 높인다.
	도난방지	•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.
	경찰서비스	• 112 신고시 출동시간 10분 이내로 한다.
문화 여가	독서	• 읍·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.
	문화시설 및 프로그램	•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,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할 수 있다.
	찾아가는 문화공연	•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.
정보 통신	초고속망	•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, IPTV시청이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을 80% 이상으로 한다.

주간농업·농촌동향 **농약 안전관리 강화**

※ 본 자료는 10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“농약 판매기록 의무화,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관리 등 농약 안전관리 강화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개요

- 농약 구매자의 이름, 주소, 품목명,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존
 - 위반시 과태료 100만 원 부과
-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교육 명문화
- 병해충 방제용 자재는 '농약활용기자재'로 등록된 후 판매
- 복제품 농약 등록 신청 완화

□ 주요 내용

- 농약관리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**제조업자·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약 구매자의 이름·주소·품목명·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도록** 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 - **농약 유통·사용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** 제조·수입·판매업자가 고독성 농약 등 16종 농약을 판매시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
 - 구매자 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
- 농업인에게 올바른 농약사용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**농촌진흥청장 등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**을 실시하도록 명문화
 - 종전에는 농약사용자 교육에 대한 법규정 없이 시행

○ '약제' 이외의 새로운 형태로 병해충 방제용 자재는 '농약활용기자재'로 등록된 후 판매

- '농약활용기자재'는 신선도 유지 기체 발생장치(1-mcp), 페로몬 활용 자재 2종을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했으며, 대상 제품별 구체적인 등록기준 제정
 - 1-mcp 기체발생장치 : 과일이나 채소의 신선도를 높여 저장기간을 늘리는 장치
- 해당 제품을 제조·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전성 자료 등을 준비하여 농촌진흥청에 등록

○ 복제품 농약의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국내에 등록된 지 10년이 넘은 농약에 대해서는 등록이 쉽도록 등록 신청시 시험성적서 제출면제 요건 완화

- 농약 등록시 제출되는 시험성적서는 그동안 15년간 최초 개발자에게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왔으나, 이를 10년으로 단축
 - 국내에 등록된 지 10년 이상이 된 복제품 농약 산업이 활성화됨은 물론, 경쟁에 따른 가격 안정화 기대

※ 개정 농약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은 부록 참고.

부록

<개정 농약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>

현행	주요 개정내용
○ 살균·살충·제초의 효과를 나타내는 약재만 농약으로 규정	○ 농약활용기자재 제도 도입(제23조4호 등) -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등을 <u>농약활용기자재</u> 로 정의함
○ 위해성이 판명된 농약에 대한 회수·폐기 규정 없음	○ 직권취소 농약에 대한 회수·폐기(제7조, 제14도, 제32조) - 농촌진흥청장이 위해성이 판명된 농약에 대해 제조업자·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
○ 농약사용자 교육에 대한 법에 규정이 없음	○ 농약사용자 교육 및 환경오염 방지 조치 강구(제23조제2항, 제3항) - 농촌진흥청장 등에게 농약사용자에게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,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
○ 농약 판매 기록에 대해 법에 규정이 없으며, 농진청 고시에 고독성 농약을 기록토록 하고 있음	○ 제조·판매업자 등의 농약 제조·수입·판매 내용 기록(제23조의2, 제40조제2항) - 제조·수입·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품방제업자는 농약 구매자의 이름·품목명·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존 -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
○ 등록·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규정 없음	○ 등록·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검사(제24조) - 농촌진흥청장 등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·원제업·수입업·판매업 또는 방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농약·그 원료, 관계장부 또는 시설·장비를 검사하고,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함
○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위해성 판정시 등록취소 가능	○ 국제기구, 외국정부, EU 등에 의하여 해당품목이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(제14조제2항)